

「국고금 취급절차」 주요 개정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당행 조직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
- 인감신고서 징구 관련 절차 유관기관 앞 통지
- 국고수표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
- 은행이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일부 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

II 주요 개정 내용

1 용어 정비

- 조직개편 내용 반영
 - 전산정보국장 → IT전략국장
 - 국고증권실장 → 금융업무실장
-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(제87조, 제90조, 제96조)
 - 이체의뢰대상기관 → 참가기관

② 인감신고서 징구 관련 절차 유관기관 앞 통지(제19조)

- 한국은행은 관서의 인감신고서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매년 기획재정부 앞으로 통보

③ 국고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방식에 대한 내용 신설(제112조의2)

- 국고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상 「발권규정 시행세칙」을 준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고수표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별도 신설
 - 국고수표용지 취급책임자, 보관시설, 보관방식, 시재검사 주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

④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 확대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정비(제113조)

- 은행이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국고전산망 운영시간 연장, 거래자료의 보관, 이상거래 발생 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

Ⅲ 시행일

- 시행일 : 2023. 8. 18.